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17
----------	-----

2017. 6. 22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- 라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15일
 -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조병옥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충주세계소방 환경기대회추진단(한시기구) 설치 및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<기구 조정>

- 한시기구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추진단 설치(2018.12.31.까지)
 -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(안 제7절제53조,제54조,제56조)
 - 직제조정 : 5급소장 → 4급소장
 - 명칭변경 : 내수면연구소 → 내수면산업연구소
 - 기구조정 : 내수면연구소와 남부출장소 내수면지원과 통합
- ※ 1연구소(5급) 1과(내수면지원과) → 1연구소(4급) 2과(내수면산업과, 남부내수면지원과)

<사무 조정>

- 한시기구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추진단 설치(2018.12.31.까지)
- 신설 (안 제55조) :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소관사무
 - 민물고기 양식연구·기술지도 및 수산자원조성·생태체험교육에 관한 사항
 -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·관리 및 수계별 내수면어업 지원
- 삭제 (안 제62조) : 남부출장소장 소관사무
 - 대청호,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추진단(한시기구) 설치 및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2018 제13회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 설치와 수산식품거점단지 완료에 따라 병렬적으로 운영중인 내수면연구소와 내수면지원과를 통합하여 4급연구소를 콘트롤 타워로 하여 기존의 업무와 수산식품거점단지, 관상어육종센터 등 사업을 확대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내수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적합한 기구조정이라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617호
의결 연월일	2017년 월 일 (제356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5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17

제출연월일 : 2017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추진단(한시기구) 설치 및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구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기구 조정>

- 한시기구 충주세계소방환경기대회추진단 설치 (2018.12.31까지)
-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(안 제7절 제53조, 제54조, 제56조)
 - 직제조정 : 5급소장 → 4급소장
 - 명칭변경 : 내수면연구소 → 내수면산업연구소
 - 기구조정 : 내수면연구소와 남부출장소 내수면지원과 통합
 - ※ 1연구소(5급) 1과(내수면지원과) → 1연구소(4급) 2과(내수면산업과, 남부내수면지원과)

<사무 조정>

- 신설 (안 제55조) :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소관사무
 - 민물고기 양식연구·기술지도 및 수산자원조성·생태체험교육에 관한 사항
 -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·관리 및 수계별 내수면어업 지원
- 삭제 (안 제62조) : 남부출장소장 소관사무
 - 대청호,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절의 제목 “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”를 “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전단 중 “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(이하 “내수면연구소”)”를 “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(이하 “내수면산업연구소”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내수면연구소”를 “내수면산업연구소”로 한다.

제54조 전단 중 “내수면연구소”를 “내수면산업연구소”로 한다.

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5조(소관사무)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민물고기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
2.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교육장(체험전시관) 운영
3.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충주호·대청호·괴산호 등 수계 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내수면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56조 중 “내수면연구소”를 “내수면산업연구소”로 한다.

제6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3조(한시기구)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농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농 정 분 과	농정국 (농업정책과)	농정국, 농업기술원, 산림환경연구소, 축산위생연구소, 농산사업소, 내수면산업연구소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절 <u>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</u></p> <p>제53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(이하 “내수면연구소”라 한다)</u>를 설치한다.</p> <p>② <u>내수면연구소</u>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.</p> <p>제54조(소장) <u>내수면연구소</u>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제55조(소관사무)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</u> 2. <u>담수어 치어생산 보급 및 희귀어종 양식</u> 3. <u>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</u> 4. <u>양어기술 교육 및 기술이전</u> 5. <u>기타 담수어 양식에 필요한 사항</u> <p>제56조(지소) <u>내수면연구소</u>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,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7절 <u>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</u></p> <p>제53조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<u>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(이하 “내수면산업연구소”</u>-----.</p> <p>② <u>내수면산업연구소</u>-----</p> <p>제54조(소장) <u>내수면산업연구소</u>-----</p> <p>제55조(소관사무)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민물고기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</u> 2. <u>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교육장(체험전시관) 운영</u> 3. <u>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 4. <u>충주호·대청호·괴산호 등 수계 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</u> 5. <u>기타 내수면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</u> <p>제56조(지소) <u>내수면산업연구소</u>-----</p>
<p>제62조(소관사무) <u>남부출장소</u>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<u>대청호,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</u> 	<p>제62조(소관사무)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<p><삭제></p>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